# [ 과실범 ]

제14조 "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**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<u>한하여</u>** 처벌한다."

☞ 예외적으로 처벌

### 1. 과실의 의의

주의의무위반 = 결과예견의무 → 예견가능성

= 결과회피의무 → 회피가능성

\* '과실범 처벌 규정' 있어야 과실범으로 처벌가능

(고의가 없으면 무조건 과실이 되는 것 아님)

- (1) 보통, 업무상, 중과실범
  - ① 실화죄
  - ②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
  - ③ 과실가스.전기등 방류, 공급방해죄
  - ④ 과실교통방해죄
  - ⑤ 과실치사상죄

(2) 보통과실범만 있는 죄 - **과실일수죄** 

(3) 업무상, 중과실범만 있는 죄 - **업무상과실장물죄, 중과실장물죄** 

# [ 과실범의 종류 ]

- (1) 인식 없는 과실, 인식 있는 과실
  - 1) 인식 없는 과실 주의의무위반으로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
  - 2) 인식 있는 과실 법적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했으나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하여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경우
- (2) 보통과실과 업무상과실-주의의무는 동일하나 예견의무가 다름
  - 1) 주의의무는 동일하다. (객관적 예견가능성 구성요건)
  - 2) 업무에 종사하므로 일반인보다 **예견가능성**이 크기에 보다 가중되는 것 (**주관적** 예견가능성 - **책임**이 크다-책임가중,형벌가중)

"업무"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

### (3) 경과실과 중과실

- 1) 경과실 중과실 아닌 것
- 2) 중과실 주의의무를 <u>현저히 태만히</u>하는 것 → 사회통념을 바탕으로 판단
- 3) 극히 근소한 주의만 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예견 못한 경우로 가중처벌

# [ 허용된 위험의 이론 ]

일정한 생활범위에 있어서는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허용된 위험이라 한다.

→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

# [ 신뢰의 원칙 ]

- 스스로 교통법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
- → 다수인의 업무분담이 요구되는 과실범(기업활동, 외과수술 등)에 확대 적용

#### ※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

-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
-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
-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

# [결과적 가중범]

제15조 제2항 :"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**예견할 수 없을 때**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."

- → <u>예견가능성 명시, 책임주의와의 조화</u>를 위해 **고의** 기본범죄 -인과관계, 직접성의 원칙
- →예견하지 못한 **중한 결과** + **예견가능성**

Ex> 상해치사죄,폭행치사죄,낙태치사상죄,유기치사상죄,체포감금치사상죄 강간치사상죄,강도치사상죄,교통방해치사상죄

### 1. 의의

**고의**에 의한 **기본**범죄로 인하여 행위자가 **예견하지 못**한 **중한 결과** 발생. 형이 가중.

-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

## 2. 단순과실범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- 행위반가치가 무겁다.

(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포함되어있는 <u>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된 것으로,</u>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그 범죄에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위험을 <u>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발생</u>케 한 것은 순수한 과실범보다 행위불법 이 무거움)

### 3.책임주의와의 관계

# (1)문제점

고의와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보다 법정형이 높다.

## (2)가중처벌의 근거

고의, 과실의 결합설 (통설)

- 기본과 중한 결과 사이에 **인과관계**가 있고 다시 **과실**도 있어야 한다.
- →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

####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

### 1. 진정결과적 가중범

고의의 기본범죄 → **과실**로 중한 결과가 발생

#### 2. 부진정결과적 가중범

- (1) 의의- 고의 기본범죄 고의에 의해 중한 결과 발생
  문제점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고의로 중한
 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량이 더 낮아지는 처벌의 불균형이
  문제가 된다.
- (2) **긍정설** (통설, 판례)

# [ 결과적 가중범 관련 판례 ]

- 1)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<u>강간치상죄</u>가 성립한다.
- 2)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하고,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**감금치사죄**에 해당한다.
- 3) 공격조 사건- 공모하고 일인이 건조물의 피해자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진 사실
- → **현조건조물방화치상죄**인정
- 4)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예견할 수 있었다면 **강도치사죄**를 진다.
- 5) 패싸움 중 한 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도 **상해치사죄** 죄책이 있다.
- 6) 치아결손사건 (강간범 손가락 물은 사건) 결과적가중범 (강간치상죄)